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50호)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1. 9. 고 성 군 수
- 나. 회 부 일 자: 2026. 1. 9.
-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2026. 1. 21.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가. 개정이유

- 전입세대 요건 및 결혼축하금 신청기한을 완화하여 인구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시책 추가, 기존 시책 확대 · 수정 등 세부 지원기준 명확화를 통해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전입세대의 주민등록 요건 완화(안 제2조제4호)
- 2)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2조제11호 및 안 제3조 제1항제5호)
- 3) 시책 및 지원항목별 조항 정비(안 제3조)
- 4) 결혼축하금 신청기한 완화(안 제4조제1항제1호)
- 5) 한 단어로 굳어진 말의 표기 수정(안 제2조제4호, 안 제2조제6호, 안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안 제4조제1항제4호까지, 안 제7조)
- 6) 별표의 시책별 세부지원기준 명확화 및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증액
(안 별지)
- 7) 별지 제1호서식의 신설 지원 항목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추가(안 별지)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 예산조치: 2026년 추가경정예산 확보 예정
- 3) 협의
 - 가)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협의 완료[사회보장조정과-5338(2024. 10. 24.)호]
 - 나)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 조건부 협의[사회보장조정과-4357(2025. 9. 19.)호]
 -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일 연령대에 유사사업 도입 및 확대할 경우 해당 사업 조정할 것
 - 다)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지원과-43695(2025. 11. 14.)호]
- 4) 기타
 - 가)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5-1786호
 - 예고기간: 2025. 11. 10.~2025. 12. 1.(21일간)
 - 예고결과: 의견 없음
 - 나)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다)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라)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마) 비용추계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허수은)

가. 제안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입세대 요건 및 결혼 축하금 신청 기한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시책을 도입하는 한편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며, 시책별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검토내용

- 1) (안 제2조제4호) 전입세대의 주민등록 요건 중 거주 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 것으로 인구 감소 대응 측면에서 타당함.
 - ※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문 서두에 ‘같은 조 제6조’는 ‘같은 조 제6호’로 정정하는 것이 적절함.
- 2) (안 제2조제11호, 제3조제1항제5호) ‘전입고등학생’ 정의를 신설하고, 기숙사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 인구 유입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함. 다만, 신규사업인 만큼 예산확보 시점에 따라 시행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함.
 - ※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조금 없이는 수행이 곤란한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에 한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사전 통제를 확보하려는 규정임. 따라서 신규·확대 사업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근거는 마련하되, 집행은 유보(부칙에 시행일 유보 규정 명시)하는 방법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함.
- 3) (안 제3조제1항제1호)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 한방첩약, 산후건강관리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한 대상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함.
 - ※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지원이 확대되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예산확보 시점을 고려한 시행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규사업과 함께 이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함.
 - ※ 안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결혼축하금 지원 연령을 ‘19세부터’로 규정함. 「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에 따라 18세 이상도 혼인이 가능하므로 일부 혼인 적령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따라서 지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 (안 제3조제1항제2호~제5호) 다자녀 세대, 전입세대, 군내 기업체 근로자, 전입 고등학생 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기존 조항 중 불필요한 내용은 정비한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는 학기별 30만 원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임.
- 5) (안 제3조제2항) 군수가 인구시책 추진 필요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6) (제4조, 제7조, 별지) 결혼축하금 신청 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하여 수혜 누락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7) (안 별지 및 서식) 별표 시책별 지원기준 명확화하고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증액하였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신설되는 지원항목을 추가하고 뒷면 작성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을 추가 포함하였으나 신청인 제출 시 앞면과 뒷면을 구분하고 내용 누락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뒷면’ 표기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별지 제1호서식 관련) 뒷면 작성용으로 서식 상단에 ‘(뒷면)’이라는 표기를 추가

※ (안 별표 단서 조항 관련) 신규·확대 사업은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되, 집행은 부칙에 시행일 유보 규정을 두어 유보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완료되면, 단서조항(‘○ 단,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증액분은 예산 확보 후 시행할 수 있다’, ‘○ 단,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예산확보 후 시행할 수 있다.’)는 삭제하여 별표와 조례 내용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대상 확대와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개정 목적과 내용,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 등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조 관련 조문 중 일부 오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이 필요하고, 신규·확대 사업의 예산확보 여부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원칙과의 정합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있으면 명확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6. 1. 21. 수정가결

- 붙 임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2.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제안서

의안번호	제3050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6. 1. 21.
발의자	이정숙 의원

1. 수정이유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의 조정 필요성과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수정함.

2. 수정내용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와 제3조제1항제1호나목(출산장려금 지원) 중 별표의 증액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안 별표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중 “단,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증액분은 예산 확보 후 시행할 수 있다.” 를 삭제하고,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내용 중 “단,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예산 확보 후 시행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안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우측 상단에 “(뒷면)”을 추가함.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제6조 중” 을 “제6호 중” 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와 제3조제1항제1호나 목(출산장려금 지원) 중 별표의 증액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0000. 00. 00.> (개정조례안)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내용	비고																			
출산장려	결혼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가족 대상자에 지원(단, 생애 1회 한정) ※ 부부 중 1명이 기지급받은 후 재혼한 경우 지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급 (부부 중 한명에게 2년간 현금 3회 분할 지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th>1회</th><th>2회</th><th>3회</th></tr> </thead> <tbody> <tr> <td>금액</td><td>50만원</td><td>50만원</td><td>100만원</td></tr> <tr> <td>시기</td><td>신청일로부터 익월 1년 뒤</td><td>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td><td>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td></tr> </tbody> </table>	구분	1회	2회	3회	금액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구분	1회	2회	3회																				
금액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나목 대상자로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모에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아이 200만원 지급 ○ 둘째아이 400만원 지급 ○ 셋째아이 이상 1,000만원 지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th>1회</th><th>2회</th><th>3회</th></tr> </thead> <tbody> <tr> <td>첫째</td><td>100만원</td><td>100만원</td><td>-</td></tr> <tr> <td>둘째</td><td>200만원</td><td>200만원</td><td>-</td></tr> <tr> <td>셋째 이상</td><td>200만원</td><td>400만원</td><td>400만원</td></tr> <tr> <td>시기</td><td>신청일로부터 익월</td><td>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td><td>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증액분은 예산 확보 후 시행할 수 있다. 	구분	1회	2회	3회	첫째	100만원	100만원	-	둘째	200만원	200만원	-	셋째 이상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구분	1회	2회	3회																				
첫째	100만원	100만원	-																				
둘째	200만원	200만원	-																				
셋째 이상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한방첩약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대상자에 지원. 단, 셋째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청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한의원에서 한약 1제 지원(15일분: 20만원)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라목 대상자에 지원(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시 매회 100만원 지급 																					
신혼(예비) 부부 건강 검진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마목 대상자에 지원(단, 최초 1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건강검진 																					
다자녀 세대	다자녀 세대 체험놀이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체험 시설에 다자녀 세대의 체험놀이 지원 (1명당 2만원 한도)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세대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쓰레기 봉투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봉투 연 20ℓ 60매 지급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공룡박물관, 당항포 관광지,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면제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내용	비고
전입세대	공공시설 이용우대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2개월 무료, 1년간 이용료 50% 할인 ○ 고성공룡박물관 또는 당항포 관광지 무료 입장권 2매 	
	전입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지원 (단, 생애 1회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세대원 1~3명(세대주를 포함): 1명당 10만원 - 전입세대원 4명(세대주를 포함) 이상: 70만원 	
	주민세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1인 전입 후 6개월 이내 추가 전입으로 2인 세대 구성 시에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일로부터 2년간 납부한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전액 지원 	
	재산세(주택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1인 전입 후 6개월 이내 추가 전입으로 2인 세대 구성 시에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일로부터 2년간 납부한 관내 주소지 주택분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 연간 최대 10만 원 지원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전입근로자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단, 최초 1회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본인 30만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 고등학생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한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 졸업학기까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학기별 30만원 고성사랑상품권 지원 (졸업 시까지 최대 6학기 지원) ○ 단,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예산 확보 후 시행 할 수 있다.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0000. 00. 00.> (수정조례안)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내용	비고																			
출산장려	결혼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가족 대상자에 지원(단, 생애 1회 한정) ※ 부부 중 1명이 기지급받은 후 재혼한 경우 지급 불가	<input type="radio"/>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급 (부부 중 한명에게 2년간 현금 3회 분할 지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구분</td> <td style="padding: 2px;">1회</td> <td style="padding: 2px;">2회</td> <td style="padding: 2px;">3회</td> </tr> <tr> <td style="padding: 2px;">금액</td> <td style="padding: 2px;">50만원</td> <td style="padding: 2px;">50만원</td> <td style="padding: 2px;">100만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시기</td> <td style="padding: 2px;">신청일로부터 익월 1년 뒤</td> <td style="padding: 2px;">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td> <td style="padding: 2px;">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td> </tr> </table>	구분	1회	2회	3회	금액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구분	1회	2회	3회																				
금액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나목 대상자로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모에게 지원	<input type="radio"/> 첫째아이 200만원 지급 <input type="radio"/> 둘째아이 400만원 지급 <input type="radio"/> 셋째아이 이상 1,000만원 지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구분</td> <td style="padding: 2px;">1회</td> <td style="padding: 2px;">2회</td> <td style="padding: 2px;">3회</td> </tr> <tr> <td style="padding: 2px;">첫째</td> <td style="padding: 2px;">100만원</td> <td style="padding: 2px;">100만원</td> <td style="padding: 2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둘째</td> <td style="padding: 2px;">200만원</td> <td style="padding: 2px;">200만원</td> <td style="padding: 2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셋째 이상</td> <td style="padding: 2px;">200만원</td> <td style="padding: 2px;">400만원</td> <td style="padding: 2px;">400만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시기</td> <td style="padding: 2px;">신청일로부터 익월 1년 뒤</td> <td style="padding: 2px;">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td> <td style="padding: 2px;">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td> </tr> </table>	구분	1회	2회	3회	첫째	100만원	100만원	-	둘째	200만원	200만원	-	셋째 이상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구분	1회	2회	3회																				
첫째	100만원	100만원	-																				
둘째	200만원	200만원	-																				
셋째 이상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한방첩약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대상자에 지원.	<input type="radio"/> 관내 한의원에서 한약 1제 지원(15일분: 20만원)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라목 대상자에 지원(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input type="radio"/> 출산 시 매회 100만원 지급																					
신혼(예비) 부부 건강 검진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마목 대상자에 지원(단, 최초 1회 지원)	<input type="radio"/> 무료 건강검진																					
다자녀 세대	다자녀 세대 체험놀이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input type="radio"/> 관내 체험 시설에 다자녀 세대의 체험놀이 지원 (1명당 2만원 한도)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세대에 지원	<input type="radio"/>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쓰레기 봉투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input type="radio"/> 쓰레기봉투 연 20ℓ 60매 지급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input type="radio"/> 고성공룡박물관, 당항포 관광지,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면제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내용	비고
전입세대	공공시설 이용우대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2개월 무료, 1년간 이용료 50% 할인 ○ 고성공룡박물관 또는 당항포 관광지 무료 입장권 2매 	
	전입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지원 (단, 생애 1회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세대원 1~3명(세대주를 포함): 1명당 10만원 - 전입세대원 4명(세대주를 포함) 이상: 70만원 	
	주민세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1인 전입 후 6개월 이내 추가 전입으로 2인 세대 구성 시에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일로부터 2년간 납부한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전액 지원 	
	재산세(주택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1인 전입 후 6개월 이내 추가 전입으로 2인 세대 구성 시에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일로부터 2년간 납부한 관내 주소지 주택분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 연간 최대 10만 원 지원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전입근로자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단, 최초 1회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본인 30만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 고등학생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한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 졸업학기까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학기별 30만원 고성사랑상품권 지원 (졸업 시까지 최대 6학기 지원)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000. 00. 00.> (개정조례안)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기 본 현 황						
신 청 인	주 소	경남 고성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지원사항에만 기재						
출산장려 지 원	※ 해당 항목에 √ 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결혼축하금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금		<input type="checkbox"/> 한방첩약지원	
	<input type="checkbox"/>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자녀 수	자녀 종 째	신청인과의 관 계				
전입세대 및 다자녀 세대지원	가 현 족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입일자
※ 해당 항목에 √ 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쓰레기종량제 봉투 <input type="checkbox"/> 공룡박물관 및 당항포관광지 무료 입장권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번호판 제작비 <input type="checkbox"/> 전입축하금 <input type="checkbox"/> 주민세·재산세(주택분)						
<input type="checkbox"/>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전입축하금, 주민세·재산세(주택분) 통장사본 첨부						
※ 재산세(주택분)·주민세 지원 신청 시 납부영수증 첨부						
개인정보취급 동의여부 (뒷면 작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주십시오.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거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1.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본인은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000. 00. 00.> (수정조례안)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기 본 현 황						
신 청 인	주 소	경남 고성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지원사항에만 기재						
출산장려 지 원	※ 해당 항목에 √ 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결혼축하금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금		<input type="checkbox"/> 한방첩약지원	
	<input type="checkbox"/>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자녀 수	자녀 종 째	신청인과의 관 계				
전입세대 및 다자녀 세대지원	가 현 족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입일자
※ 해당 항목에 √ 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쓰레기종량제 봉투 <input type="checkbox"/> 공룡박물관 및 당항포관광지 무료 입장권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번호판 제작비 <input type="checkbox"/> 전입축하금 <input type="checkbox"/> 주민세·재산세(주택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전입축하금, 주민세·재산세(주택분) 통장사본 첨부						
※ 재산세(주택분)·주민세 지원 신청 시 납부영수증 첨부						
개인정보취급 동의여부 (뒷면 작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주십시오.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인)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거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은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50호
------------	--------

제출연월일: 2026. 1. 9.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전입세대 요건 및 결혼축하금 신청기한을 완화하여 인구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시책 추가, 기존 시책 확대·수정 등 세부 지원기준 명확화를 통해 적극적인 인구증가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입세대의 주민등록 요건 완화(안 제2조제4호)
- 나.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2조제11호 및 안 제3조제1항제5호)
- 다. 시책 및 지원항목별 조항 정비(안 제3조)
- 라. 결혼축하금 신청기한 완화(안 제4조제1항제1호)
- 마. 한 단어로 굳어진 말의 표기 수정(안 제2조제4호, 안 제2조제6호, 안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안 제4조제1항제4호까지, 안 제7조)
- 바. 별표의 시책별 세부지원기준 명확화 및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증액(안 별지)
- 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설 지원 항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추가(안 별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2026년 추가경정예산 확보 예정

다. 협의

1)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협의 완료[사회보장조정과-5338(2024. 10. 24.)호]

2)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 조건부 협의[사회보장조정과-4357(2025. 9. 19.)호]

→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일 연령대에 유사사업 도입 및 확
대할 경우 해당 사업 조정할 것

3)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지원과-43695(2025. 11. 14.)호]

라. 기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5-1786호

가) 예고기간: 2025. 11. 10.~2025. 12. 1.(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시·군·구”를 “시군구”로,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존·비속”을 “존비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입고등학생”이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 신고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원대상에게 별표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가목에서 마목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산장려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결혼축하금 지원: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혼인신고일 기준). 단,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나.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다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한방첩약 지원: 제3조제1항제1호 나목 대상자 중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

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출생아 기준 군내에 6개월 이전부터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성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마.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신혼(예비)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다자녀세대는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전입세대는 공공시설이용 우대, 전입축하금, 주민세·재산세(주택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군내 기업체 근로자가 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업체 근로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5.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전입고등학생에게 관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학기별 30만원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각 호 외에 군수가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제1항제1호 중 “읍 · 면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다만,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은 제외한다”를 “다만,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은 제외하고, 결혼축하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 제7조 중 “읍 · 면”을 “읍면”으로 한다.
- 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와 제3조제1항제1호나목(출산장려금 지원) 중 별표의 증액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생하거나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입세대”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u>시·군·구</u> 에 주민등록을 <u>2년</u> 이상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세대를 말한다.	4. ----- ----- <u>시군구</u> -- ----- <u>1년</u>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가족”이란 세대 구성원 중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u>존·비속</u> ,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를 말한다.	6. ----- ----- <u>존</u> <u>비속</u> -----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 “전입고등학생”이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 신고 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u>군수는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u> 다만, 다른 법령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u>고성군수</u> (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은 제외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1. 출산장려 사항은 출산장려금 지급, 한방첩약 지원으로 하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한방첩약 지원은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에게 지원한다.

<신 설>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원대상에게 별표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출산장려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결혼축하금 지원: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혼인신고일 기준). 단,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에 주민등
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 설>

나.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
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
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다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신 설>

다. 한방첩약 지원: 제3조제1
항제1호 나목 대상자 중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

<신 설>

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출
생아 기준 군내에 6개월
이전부터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
성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
정

<신 설>

마.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비 지원: 신혼(예비)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신청
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2.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신생
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
터 모가 계속하여 군내에 주
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3.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은 신혼(예비)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6
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자
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여야 지원할 수 있다.

4. 다자녀세대는 주민등록표 등
본·초본 무료발급, 자동차번호
판 교체비, 쓰레기봉투, 공공
시설 입장료 면제,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등을 지원할 수 있

2. 다자녀세대는 다자녀세대 체
험놀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 자동차번호판 교체
비,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을 지원할 수 있
다.

3. 전입세대는 공공시설이용 우
대, 전입축하금, 주민세·재산
세(주택분) 등을 지원할 수 있
다.

4. 군내 기업체 근로자가 군으
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업
체 근로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

5. 전입세대에게는 공공시설이
용 우대, 전입축하금, 재산세
(주택분)·주민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6. 군내 기업체 근로자가 군으
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업
체 근로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7. 결혼축하금 지원은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혼인신고일 기
준) 중 한명이 주소지가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
부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인구시책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
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5.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은 전입고등학생에게 관내 고
등학교 졸업 시까지 학기별 30
만원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제1항 각 호 외에 군수가 인
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인구
시책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시책과 관련한 전입신고 및 출생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인구시책과 관련한 지원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인구시책과 관련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번호판 제작비는 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

-----.

2. 읍면장 -----

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15일까지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읍·면장은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지원변동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5일까
지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변동사유가 적용되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G4C) 등을 이용
하여 관련부서에서 변동사유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보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포상) 군수는 인구시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읍·면, 마을 및 기관·단체 유공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3. 읍면장

② (현행과 같음)

읍면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별표] (현행)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내용	비고												
출산려	결혼축하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제7호 대상자에게 지원(단, 생애 1회 한정)	<input type="radio"/>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급 (부부 중 한명에게 2년간 현금 3회 분할 지급)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 <th>구분</th><th>1회</th><th>2회</th><th>3회</th></tr> <tr> <td>금액</td><td>50만원</td><td>50만원</td><td>100만원</td></tr> <tr> <td>시기</td><td>신청일로부터 익월</td><td>첫 지급월 로부터 1년 뒤</td><td>첫 지급월 로부터 2년 뒤</td></tr> </table>	구분	1회	2회	3회	금액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첫 지급월 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 로부터 2년 뒤	
구분	1회	2회	3회													
금액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첫 지급월 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 로부터 2년 뒤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대상자가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모에게 지원	<input type="radio"/> 첫째아이 100만원 지급 <input type="radio"/> 둘째아이 200만원 지급 <input type="radio"/>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지급														
한방첩약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대상자 중 셋째아이 이상 출산모에게 지원. 단, 셋째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	<input type="radio"/> 관내 한의원에서 한약 1제 지원(15일분 : 20만원)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대상자 중 출산모에게 지원 (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input type="radio"/> 출산 시 매회 100만원 지급														
신혼 (예비) 부부 건강검진 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대상자에 지원(단, 최초 1회 지원)	<input type="radio"/> 무료 건강검진														
다자녀 세대	다자녀 세대 체험놀이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input type="radio"/> 관내 체험 시설에 다자녀 세대의 체험놀이 지원 (1명당 2만원 한도)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중 2021년 1월1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세대에 지원	<input type="radio"/>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쓰레기 봉투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input type="radio"/> 쓰레기봉투 연 20ℓ 60매 지급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input type="radio"/> 고성공룡박물관, 당항포 관광지,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면제													
전입 세대	공공시설 이용우대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 세대에 지원	<input type="radio"/>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2개월 무료, 1년간 이용료 50% 할인 <input type="radio"/> 고성공룡박물관 또는 당항포 관광지 무료 입장권 2매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내용	비고
전 입 세 대	전입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지원 (단, 전입 최초 1회 한정)	<input type="radio"/> 지원금액 - 전입세대원 1~3명(세대주를 포함): 1명당 10만원 - 전입세대원 4명(세대주를 포함) 이상: 70만원	
	주민세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input type="radio"/>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2년간 전액 지원	
	재산세 (주택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input type="radio"/> 주소지 주택분 재산세(지방 교육세 등 포함)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2년간 지원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6호의 전입근로자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단, 최초 1회 한정)	<input type="radio"/> 지원금액: 본인 30만원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0000. 00. 00.>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내용	비고																			
출산려	결혼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가족 대상자에 지원(단, 생애 1회 한정) ※ 부부 중 1명이 기지급받은 후 재혼한 경우 지급 불가	<input type="radio"/>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급 (부부 중 한명에게 2년간 현금 3회 분할 지급) <table border="1"> <tr> <td>구분</td><td>1회</td><td>2회</td><td>3회</td></tr> <tr> <td>금액</td><td>50만원</td><td>50만원</td><td>100만원</td></tr> <tr> <td>시기</td><td>신청일로부터 익월</td><td>첫 지급월 로부터 1년 뒤</td><td>첫 지급월 로부터 2년 뒤</td></tr> </table>	구분	1회	2회	3회	금액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첫 지급월 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 로부터 2년 뒤								
구분	1회	2회	3회																				
금액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첫 지급월 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 로부터 2년 뒤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나목 대상자로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모에게 지원	<input type="radio"/> 첫째아이 200만원 지급 <input type="radio"/> 둘째아이 400만원 지급 <input type="radio"/> 셋째아이 이상 1,000만원 지급 <table border="1"> <tr> <td>구분</td><td>1회</td><td>2회</td><td>3회</td></tr> <tr> <td>첫째</td><td>100만원</td><td>100만원</td><td>-</td></tr> <tr> <td>둘째</td><td>200만원</td><td>200만원</td><td>-</td></tr> <tr> <td>셋째 이상</td><td>200만원</td><td>400만원</td><td>400만원</td></tr> <tr> <td>시기</td><td>신청일로부터 익월</td><td>첫 지급월 로부터 1년 뒤</td><td>첫 지급월 로부터 2년 뒤</td></tr> </table>	구분	1회	2회	3회	첫째	100만원	100만원	-	둘째	200만원	200만원	-	셋째 이상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첫 지급월 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 로부터 2년 뒤	
구분	1회	2회	3회																				
첫째	100만원	100만원	-																				
둘째	200만원	200만원	-																				
셋째 이상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첫 지급월 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 로부터 2년 뒤																				
한방첩약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대상자에 지원.	<input type="radio"/> 관내 한의원에서 한약 1제 지원(15일분: 20만원)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라목 대상자에 지원(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input type="radio"/> 출산 시 매회 100만원 지급																					
신혼(예비) 부부 건강 검진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마목 대상자에 지원(단, 최초 1회 지원)	<input type="radio"/> 무료 건강검진																					
다자녀 세대	다자녀 세대 체험놀이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input type="radio"/> 관내 체험 시설에 다자녀 세대의 체험놀이 지원 (1명당 2만원 한도)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무료발급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중 2021년 1월1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세대에 지원	<input type="radio"/>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쓰레기 봉투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input type="radio"/> 쓰레기봉투 연 20ℓ 60매 지급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input type="radio"/> 고성공룡박물관, 당항포 관광지,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면제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내용	비고
전입세대	공공시설 이용우대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2개월 무료, 1년간 이용료 50% 할인 ○ 고성공룡박물관 또는 당항포 관광지 무료 입장권 2매 	
	전입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지원 (단, 생애 1회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세대원 1~3명(세대주를 포함): 1명당 10만원 - 전입세대원 4명(세대주를 포함) 이상: 70만원 	
	주민세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1인 전입 후 6개월 이내 추가 전입으로 2인 세대 구성 시에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일로부터 2년간 납부한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전액 지원 	
	재산세(주택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1인 전입 후 6개월 이내 추가 전입으로 2인 세대 구성 시에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일로부터 2년간 납부한 관내 주소지 주택분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 연간 최대 10만 원 지원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전입근로자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단, 최초 1회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본인 30만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 고등학생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한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 졸업학기까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학기별 30만원 고성사랑상품권 지원 (졸업 시까지 최대 6학기 지원)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현행)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000. 00. 00.>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기 본 현 황					
신 청 인	주 소	경남 고성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지원사항에만 기재					
출산장려 지 원	※ 해당 항목에 ✓ 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결혼축하금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금	<input type="checkbox"/> 한방첩약지원		
	<input type="checkbox"/>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자녀 수	자녀 중 째	신청인과의 관 계			
전입세대 및 다자녀 세대지원	가 현 족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 항목에 ✓ 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쓰레기종량제 봉투 <input type="checkbox"/> 공룡박물관 및 당항포관광지 무료 입장권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번호판 제작비 <input type="checkbox"/> 전입축하금 <input type="checkbox"/> 주민세·재산세(주택분)					
<input type="checkbox"/>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전입축하금, 주민세·재산세(주택분) 통장사본 첨부					
※ 재산세(주택분)·주민세 지원 신청 시 납부영수증 첨부					
개인정보취급 동의여부 (뒷면 작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주십시오.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세대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인)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 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거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1.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본인은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서명)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약

*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가. 관련 조문

- 안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1항제5호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전입고등학생에게 관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학기별 30만원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증액

가. 관련 조문

- 안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1항제1호나목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다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출산장려금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가. 추계의 전제

- 1) 사업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 신고한 고등학생
- 2) 사업규모

[2026년] 300천 원 * 70명 * 2학기 = 42,000천 원

[2027년] 300천 원 * 140명 * 2학기 = 84,000천 원

[2028년~] 300천 원 * 210명 * 2학기 = 126,000천 원

* 출산장려금 지원 증액

가. 추계의 전제

- 1) 사업대상: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기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2) 사업규모

[2026년] 182,500천 원

첫째:	500천 원 * 75명	= 62,500천 원
둘째:	1,000천 원 * 45명	= 75,000천 원
셋째:	1,000천 원 * 20명 + 3,000천 원 * 5명 + 2,000천 원 * 5명	= 45,000천 원

[2027년] 210,000천 원

첫째:	1,000천 원 * 75명	= 75,000천 원
둘째:	2,000천 원 * 45명	= 90,000천 원
셋째:	1,000천 원 * 5명 + 4,000천 원 * 5명 + 2,000천 원 * 10명	= 45,000천 원

[2028년] 300,000천 원

첫째:	1,000천 원 * 100명	= 100,000천 원
둘째:	2,000천 원 * 60명	= 120,000천 원
셋째:	4,000천 원 * 15명 + 2,000천 원 * 10명	= 80,000천 원

[2029년~] 320,000천 원

첫째:	1,000천 원 * 100명	= 100,000천 원
둘째:	2,000천 원 * 60명	= 120,000천 원
셋째:	4,000천 원 * 20명 + 2,000천 원 * 10명	= 100,000천 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 계
세출	군비	224,500	294,000	426,000	446,000	446,000	1,836,500

다. 재원조달방안: 일반회계 편성

(단위: 천 원)

구 分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 계
재원 조달	의존재원	-	-	-	-	-
	자체재원	224,500	294,000	426,000	446,000	446,000
	기 타		-	-	-	-
	소 계	224,500	294,000	426,000	446,000	446,000
작성자: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 원)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재원조달	224,500	294,000	426,000	446,000	446,000	1,836,500
자체 수입	소 계	224,500	294,000	426,000	446,000	1,836,500
	지방세	224,500	294,000	426,000	446,000	1,836,500
	세외수입	-	-	-	-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6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예정

3. 관련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